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41호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공고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와 그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전용 가능한 품목(기술·물자·S/W)을 말하며 그 범위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물품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난해 수출된 주요품목과 전략물자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출시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수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수출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수출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12.5~10)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자진신고 대상 해당 기업은 동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2년 5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21일

2. 신고대상 :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 수출기업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품목 수출 기업

3. 신고방법

가. 신고장소 : 전략물자관리원 불법수출 신고센터

- 온라인(원칙) 또는 팩스(예외) 접수

*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90~9495)

나. 신고서류 : 별지서식 및 구비서류(전략물자 사전판정서)

* 전략물자 사전판정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41~6, 6451~6)

4. 신고자 혜택

가. 행정처분 경감 : 기존의 불법수출행위 업무처리 내부지침과 별도의 경감 기준 마련 적용

나. CP 기업 구축 지원 : 교육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한해 교육 우선 신청권과 CP체제 구축 우선 지원

* 단, 기간 내 미 신고기업에 대하여는 국정원, 해경 등과 연계, 특별단속 기간을 두어 적발 기업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 실시

5. 신고기간 종료 후 조치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시 가중처벌 등 처분 강화

2012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관세청장 방위사업청장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서

처리기간 : 15일 (사전판정서를 첨부할 경우 즉시)

신고인	①기 업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등록번호	
	④성 명(대표자)			
	⑤주 소		(전화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⑦품목명(상품명)		⑧HS번호	
			⑨CAS 번호 *화학물질일 경우 기재	
	⑩단가		⑪수량	
	⑫금액		⑬수입자 (상호 또는 명칭)	
	⑭수출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	⑮수출시기	YYYY.MM
⑯전략물자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일 경우 해당에 표기	
⑰상황허가 대상품목 여부 *상기 ⑯번 비해당에 표기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 2에 의거한 상황허가 대상품목여부를 표기			□예 □아니오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상기 품목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1부

※ 신고하고자 하는 품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후 신고 요망

[별지 제4호 서식]

Annexed paper No. 4 (앞면)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Classification (Application) Form

(용)

처리기간 : 15일
Process due : 15 days

① 신청인 Applicant	상호 및 기타명칭 Name of Company		성명 Name	신청자 성명 Name of Applicant	
	주 소 Address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전 화 Telephon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② HS번호 HS Code	③ 물품명(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	④ 형식 및 규격 Type and Specifications		⑤ 전략물자 해당여부(해당시 통제번호 기재) Controlled(Control Classification No.) / Uncontrolled
		모델번호 및 모델명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Model Number & Name (Items developed or produced from the technology)	규격/용도 Specifications/Usage	

⑥ 판정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of Classification		⑦ 발급번호 Issue No.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item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Section 2, Article 20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Section 1,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⑤항과 같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⑤ above as stipulated in Section 2,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200 . . .

기관장 (인)
Sealed by Head of Classification Agency

구비서류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1부
※주의 제⑤항, 제⑥항, 제⑦항은 사전판정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Accompanying documents:
Documents, **such as manuals, catalogues, or specifications,** indicating the functions, usage an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requested items. - 1 copy

※Attention : Item ⑤, Item ⑥, Item ⑦ should be filled in by the classification agency.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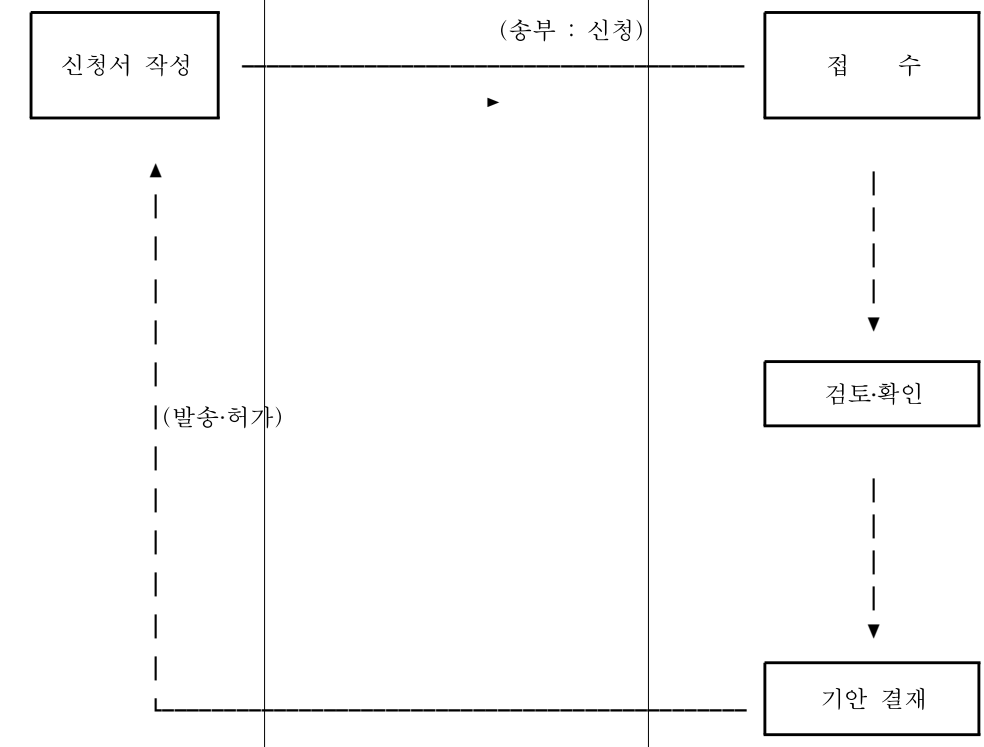		○ 지식경제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의 전략물자 -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에 의한 일반방산물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 ○ 방위사업청 - 별표 3(군용물자품목)의 전략물자 단, 일반방산물자 제외 - 수입국이 별표 2에 열거한 전략물자를 군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